

#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9,153,203	14,674,596
일반회계	458,041,357	13,741,241
특별회계	31,111,846	933,355
기타특별회계	31,111,846	933,3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09,768	174,293
수질개선특별회계	6,488,917	194,66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2,342	14,170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4,371,381	131,141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200,000	6,000
하수도특별회계	13,277,938	398,338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491,500	14,745

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683,123천원이고, 재난·재해예비비는 2,411,60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